

교육품질자체평가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대학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대상) 우리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등의 발전전략 및 전략과제에 연계된 추진성과를 토대로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
제3조(평가영역) 자체평가 및 교육품질 평가의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·연구 영역
2. 조직·운영 영역
3. 시설·설비 영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제4조(평가지표)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평가시기)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, 교육품질 평가는 우리대학의 업무 및 시기에 맞춰 평가한다.

제6조(전담부서) 자체평가 기본계획 및 총괄적 업무수행은 사무처에서 담당한다.

제7조(평가방법) ① 전담부서는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,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지한다.

- ②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학과 및 행정부서는 실무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.
- ③ 실무위원회는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후,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8조(자체평가 위원회) ① 자체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자체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는 사무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산학협력단장,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의 대상 및 항목
2. 자체평가 결과
3.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및 제도 개선
4. 기타 자체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(자체평가 실무위원회) 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이의신청) 위원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보하고,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재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한다.

제12조(평가결과 보고) 위원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평가결과의 활용)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.

- 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우리대학의 발전계획 수립,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·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4조(기타)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